

영등포구의회
제209회 제1차 정례회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9. 14.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1호로 2018년 8월 3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영등포구의회 의결 후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문래창작촌 예술인 지원 및 예술인들과 철공소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넓히고, 문래동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안내센터 및 편의시설 구축을 통해 문래동을 문화예술창작 거리로 조성하고자 함 .

4.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 재산

□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재산의 표시			소유자	재산가액 (단위:천원)				비고
소재지	취득현황(㎡)			토지		건물		
	토지	건물		공시지가 (천원/㎡)	금액	단가 (천원/㎡)	금액	
문래동2가 20-2	216.5	636.48	조영호 함수정	3,434	743,461	-	257,176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6.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0억 이상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변경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우리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안건은,

- 문래동2가 20-2번지의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636㎡ 규모의 건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문래동 창작예술촌 방문객과 창작 예술인 등을 위한 안내센터 및 편의시설, 다목적실, 커뮤니티룸 등 “문래예술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 그동안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 동 시설의 건립을 위해 2013. 6월 현장시장실 운영시 “문래창작촌 네트워킹 공간 조성 필요성”에 대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에서 문래예술창작촌에 대한 설문조사 용역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2015. 12월 시비 15억원을 확보하고 구비 5억원을 편성하여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대상 건물 및 부지 조사를 실시하여 2018. 5월 매입 대상 물건을 확보한 상태임

○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 총 사업규모는 35억 2백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시비 15억원과 구비 20억 2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감정평가 수수료 등 2천 1백만원, 건물매입비 19억 2천 5백만원, 리모델링 공사비 15억 5천 6백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은, 지역주민과 예술인, 소공인의 소통 공간 조성을 통한 다양한 협업체계 구성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의 거점 공간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방문객의 불편해소와 정보 제공 역할을 함으로써, 문래동이 서울의 대표 예술창작 거리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취소포함)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영등포구의회
제209회 제1차 정례회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9. 14.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1호로 2018년 8월 3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영등포구의회의 의결 후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영등포 청년 일꾼터” 설치에 따른 舊 당산2동 청사 관리계획 변경】

구 당산2동청사를 매각하도록 구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목적(청년 일꾼터 설치)으로 활용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매각취소)하고자 함

4.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 재산

□ “영등포 청년 일꾼터”설치에 따른 舊 당산2동 청사 관리계획 변경

구분	매각재산의 표시				소유자	관리계획 변경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	건물			
변경 전	당산동6가 305-4 외 4필지	대지	551.7	467.33	영등포구	공유재산 매각	'14.12.19. 제185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결
변경 후	당산동6가 305-4 외 4필지	대지	551.7	467.33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6.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0억이상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변경됨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우리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안건은,

- 당초 당산동 6가 305-4번지, 구)당산2동 청사 매각을 통해 구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였으나,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매각취소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 그동안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 2018년 1월 25일 행정안전부에 “청년문화일쑤터” 특별교부세 사업을 신청하여,
- 2018년 3월 리모델링비 2억원, 자산취득비 2억원 등 총 4억원의 청년문화일쑤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 영등포 청년활동 거점공간을 마련하여 청년과의 네트워킹과 협업을 통해 일자리 등 청년문제를 해소하고자
- 구)당산2동 청사의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8. 9월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11월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 2019년 2월 위탁사무를 개시할 예정임

○ 검토결과,

- “영등포 청년 일쑤터” 설치에 따른 구 당산2동 청사 관리계획 변경안의 경우, 당초 동청사를 매각하도록 승인을 받았으나, 청년에게 일자리는 일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삶과 미래를 지켜주는 가치이므로 청년들의 취업과
취업정보 공유와 자료제공, 학습과 네트워크가 가능한 청년 일자리
전용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실업문제 등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구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매각취소
관리계획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취소포함)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영등포구의회
제209회 제1차 정례회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9. 14.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1호로 2018년 8월 3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영등포구의회 의결 후 시행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대림3동 어린이집” 신축】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은 대림3동 지역에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4.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 재산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대림3동 어린이집” 신축

구분	재산의 표시			소유자	재산가액 (단위:천원)				비고
	소재지	취득현황(㎡)			토지		건물		
		토지	건물		공시지가 (천원/㎡)	금액	단가 (천원/㎡)	금액	
매입	대림동 740-7	285.2	321.48	조화자	3,232	921,766	-	25,121	
신축	대림동 740-7	-	427.8	영등포구	-	-	-	1,605,940	신축 공사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6.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0억이상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변경됨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우리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본 안건은,

- 대림3동 740-7번지 토지 285.2 m^2 지하1층/지상3층 매입을 통해, 지상3층, 연면적 427 m^2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임.

○ 그동안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 2018년 6월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사업대상지 선정 사전검토와 확충심의를 통해 2018. 7월 사업비승인이 결정된 사안임

○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총 사업규모는 33억 9천 1백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 3억 5천 8백만원, 시비 25억원, 구비 5억 3천 3백만원이며,

- 세부 사업별 추진내용은, 부지매입비 17억 8천 6백만원, 건축비 16억 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이용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대림3동 지역의 열악한 보육여건을 개선하여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양육부담 완화와 보육 사각지대 해소 등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과 공공책임보육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취소포함)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